

# **의정정보 2012-12호**

|                    |     |
|--------------------|-----|
| 1. 최근 제·개정 법령      | 3   |
| 2.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27  |
| 3. 최근 중앙정부의 주요 동향  | 83  |
| 4. 행복한 책임기         | 113 |

# 모두 보기

## 최근 제·개정 법령

- ① 해운법 시행령(5)
- ② 송달료 규칙(7)
- 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0)
- ④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12)
- ⑤ 도로법 시행규칙(14)
- ⑥ 도로법 시행령(17)
- ⑦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시행령(20)
- ⑧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22)
- ⑨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규칙(24)
- 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26)
- ⑪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28)
- ⑫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30)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① 경상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35)
- ② 경상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39)
- ③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46)
- ④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 조례(53)
- ⑤ 부산광역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61)
- ⑥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70)
- ⑦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86)

## 최근 중앙정부의 주요 동향

- ①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 화장실 대기시간 줄어든다(93)
- ② '아리랑'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확정(101)
- ③ 농어촌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 대폭 확대(103)
- ④ 내년부터 수형자에게 맞춤형 교정교화로 재범방지 노력 강화(104)
- ⑤ 장애인용 공중화장실도 남·녀 구분해 설치하도록 권고(106)
- ⑥ '13년부터 5개 국립병원에 학교폭력 치료·상담센터 운영(109)
- ⑦ 발주계획부터 대가지급까지 지방계약 전 과정 공개한다(111)
- ⑧ 우수 쌀가공식품 온라인 판매 활성화 추진(113)
- ⑨ 요양병원 옥석 가린다(117)

행복한 책읽기..... 장자방(121)

---

# 최근 제·개정 법령

---

## 최근 제·개정 법령

|                                  |    |
|----------------------------------|----|
| ① 해운법 시행령 .....                  | 5  |
| ② 송달료 규칙 .....                   | 7  |
| 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10 |
| ④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         | 12 |
| ⑤ 도로법 시행규칙 .....                 | 14 |
| ⑥ 도로법 시행령 .....                  | 17 |
| ⑦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시행령 .....       | 20 |
| ⑧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             | 22 |
| ⑨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규칙 .....            | 24 |
| 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 26 |
| ⑪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    | 28 |
| ⑫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 30 |

# 1] 해운법 시행령

[공포 2012.11.30, 시행 2012.12.02]

## 1. 개정이유

여객선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고객만족도 평가대상을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나 승인을 받은 모든 여객운송사업자로 확대하고, 섬지역 주민의 해상교통을 위하여 선정된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운법」이 개정(법률 제 11480호, 2012. 6. 1. 공포, 12. 2. 시행)됨에 따라 선박건조 비용 지원대상에 관한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국고지원 대상 선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안 제11조의2 신설)

- 1)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선정 기준을 선령(船齡)이 15년을 초과하는 선박을 대체하는 경우와 기존에 운항하는 선박보다 총톤수 및 최대속력이 각각 10퍼센트 이상 크고 빠른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21조의2 및 별표 1 신설)

- 1)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하고,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운항정지명령 또는 1년 이내의 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반 사유 및 최근 3년 이내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처분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함.

다.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관할 기준 마련 및 수산물운송사업 관련 권한의 위탁 등(안 제27조제2항 및 제5항 신설)

- 1)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관할을 내항 여객운송사업, 외항 여객운송사업, 내항 화물운송사업 및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중 수산물운송사업에 관한 사업의 등록, 사업계획변경 신고 수리 등에 대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는 등 해상운송에 관한 업무의 권한 소재를 명확히 함.

### **3.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2 송달료규칙**

[공포 2012.11.30, 시행 2012.12.3]

### **1. 개정이유**

- 가. 송달료 납부 관련 양식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 납부서 양식의 문구변경과 같이 단순한 기술적인 사항의 수정을 위하여 빈번하게 규칙개정을 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규칙에서 삭제하고 예규에 위임하고자 함
- 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납부절차를 규정하고,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송달료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다. 우표로 납부하던 송달료를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하나의 사건에서 기존 예납된 송달료와 별도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라. 그 밖에 전산화된 송달실무를 반영하고, 송달료 국고귀속 처리시한을 변경하며, 해석상 논란이 있는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함

### **2. 주요내용**

- 가. 송달료 납부 관련 양식을 예규로 위임하고,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납부절차 등을 규정함(제3조제1항, 제2항)
  - 1) 단순 기술적인 사항의 변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규칙의 별지 서식을 삭제하고, 관련양식을 예규로 정하거나

예규에 위임하여 전산양식으로 정하도록 함

2)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송달료 납부절차를 규정함

나. 신용카드등에 의한 송달료 납부의 근거를 규정함(제3조의2)

1)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범위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납부절차는 현금납부에 준하도록 함(제1항)

2)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을 정의하고,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 일을 송달료납부일로 봄(제2항, 제3항)

3)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이 납부인으로부터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납부한 수수료잔액은 이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함(제4항, 제5항)

다. 전산화된 송달실무를 반영한 절차변경(제4조 및 제8조제1항, 제3항)

1) 송달물처리 정보가 전산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기존에 3통 출력하던 우편송달부를 1통만 출력하여 송달물과 함께 우체국에 송부하고, 우체국에서 우편송달부에 요금후납우편발송확인을 한 후 이를 관리은행에 보내어 송달료 지급준비를 하도록 함

라. 송달료 종결등록 등 규정 정비(제9조)

1) 사건의 개시를 구하는 적극적 당사자 외에 제3자가 납부한 송달료는 사건종결 이전이라도 관련 업무가 완료되면 종결 등록을 하도록 함(제1항 단서)

2) 제1항에 단서에 따른 종결등록 시 잔액환급계좌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환급 조치하도록 함(제2항)

마. 송달료의 국고귀속 처리시한 변경(제12조)

- 1) 법원보관금, 정부보관금의 처리규정 및 현행 실무를 반영하여 송달료의 국고귀속 처리시한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로 함

### **3.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2012.11.30, 시행 2012.12.2]

#### **1. 개정이유**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유림 영림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역사적·문화적·자원적 가치가 있는 수종에 대하여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관리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56호, 2012. 6. 1. 공포, 12. 2. 시행)됨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요건,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요건, 특별수종육성권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무계획적인 벌채로 인한 산림훼손을 막기 위하여 3헥타르 이상의 벌채사업은 설계·감리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요건(안 제23조의2 신설)

- 1) 국유림영림단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기능2급 이상의 산림 경영기술자가 구성인원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구성인원 중에 1명 이상 포함 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 2) 국유림영림단이 산림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임업기능인으로 구성되게 하여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의 설계·감리(안 제26조)

- 1) 지금까지 벌채사업은 설계·감리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3헥타르 이상의 벌채사업은 설계·감리를 하도록 하는 한편, 임도사업은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리를 하던 것을 그 공사비 규모가 크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여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천만원 이상이면 감리하도록 함.
- 2) 무계획적인 벌채로 인한 산림 훼손을 막는 한편, 대다수의 임도사업에서 안전하고 견고한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요건 등(안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7까지 신설)

- 1) 산림청장은 단일 수종이 특정 지역에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해당 수종이 역사적·문화적·자원적 가치가 있어 집중적으로 보호·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수종육성권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특별수종육성권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수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 2) 특별수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위원에 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보존 가치가 있는 금강소나무림 등의 집중적인 보호·육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3.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4]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공포 2012.11.30, 시행 2012.12.01]

### **1. 개정이유**

- 가. 등기특별회계의 주된 수입원인 수수료 수입이 부동산 거래의 침체, 인터넷 열람·발급 증가, 전자신청 및 전자표준양식 신청 증가 등으로 인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는데 반하여 지출요인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나. 따라서, 등기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중전 활성화를 위해 대폭 할인되었던 전자신청 및 전자표준양식신청수수료의 할인폭과 일부 신청 수수료를 조정하고, 인터넷 열람·발급수수료를 인하 전 가격으로 환원함
- 다. 등기 관련 각종 수수료 납부에 사용되는 등기수입증지의 부정한 재사용을 방지하고 수수료 납부에 관한 국민의 편의와 업무 효율제고를 위하여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전면적인 현금납부 및 전자납부제도를 시행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를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함(제2조제2항)
- 나.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 열람수수료를 1등기기록에 대하여 700원으로 함(제3조제2항)

- 다. 부동산등기 중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경우 신청수수료를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으로 함(제5조의2제1항)
- 라.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산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3,000원으로 함(제5조의5제1항)
- 마.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5,000원으로 함(제5조의5제3항)
- 바.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중 등기수입증지 부분을 삭제하고 전자적 납부방법을 추가함(제6조제3항)
- 사. 등기신청수수료의 일정 조건부 현금납부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여 전면적인 현금납부로 함(제6조제3항 단서 삭제)
- 자. 과·오납된 등기신청수수료 등 납부 및 환급에 관한 규정 중 등기수입증지 부분을 삭제하고 현금과 전자적 방법에 의한 납부 및 환급 방법을 추가함(제6조제4항, 제9항, 제10항)

### 3.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4항·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도로법 시행규칙**

[공포 2012.11.30, 시행 2012.12.02]

### **1. 개정이유**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1471호, 2012. 6. 1. 공포, 12.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 시 제출서류(안 제9조의2 신설)
- 1)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공고 당시 이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여 계속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도로관리청에 사업의 진행 상황을 신고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하도록 함.
- 나. 도로대장의 작성 및 기재사항 등 구체화(안 제15조 및 별지 제20호서식)
- 1) 도로대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시설물 제원 및 안전시설 조서 등 도로대장의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고,

지적정보 등이 표시된 준공도면과 지형도면을 도로대장과 함께 관리하도록 하며, 도로대장의 형태에 따른 보관방법 등을 정함.

다.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의 전자도면 제출(안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 1) 도로대장을 전자적 시스템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도로 굴착공사 또는 주요지하매설물 설치공사를 마친 때 제출하는 설계도면이나 준공도면은 전자도면으로 제출하도록 함.

라. 도로점용허가 취소의 절차와 방법(안 제22조의2 신설)

- 1)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점용목적에 위배한 경우나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도로 관리청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반사실을 조사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도로 관리청은 3회 이상 점용료 납부를 촉구하도록 하는 등 도로점용허가 취소의 절차와 방법을 정함.

마. 민원 처리기간 조정(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

- 1) 민원 처리기간을 현실화하여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처리 기간을 2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아치 및 육교 사용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하는 도로점용 허가신청 및 도로 점용허가 변경 신청의 처리기간을 4일에서 7일로 연장

하며,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의 처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함.

### **3.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6 도로법 시행령**

[공포 2012.11.27, 시행 2012.12.02]

### **1. 개정이유**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전에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해당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며, 도로점용허가 시 보행자를 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1471호, 2012. 6. 1. 공포, 12.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하실이나 공사장의 진·출입로 등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명확히 하며 많은 사람이 소유하는 시설에 대한 점용료 징수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주민 등 의견 청취절차(안 제19조의2 신설)

- 1)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명칭,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함.

나. 도로구역·공고지역에서 행위제한 대상(안 제19조의3 신설)

- 1) 도로구역이나 도로구역의 결정·변경의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개발행위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인공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분할·합병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다. 도로점용허가 대상 명확화(안 제28조제5항 및 별표 2)

- 1) 도로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 대상인 지하실은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설치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 등에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나 점포 등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공사장과 그 진·출입로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함

라.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안 제30조의2 신설)

- 1)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 중 안전펜스, 안내표지판 등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공사용 자재 및 장비 등은 허가된 점용부지 외에 방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마. 주요지하시설물 범위 확대(안 제31조제3호 및 제10호)

- 1) 도로구역에 매설된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로시설 중 관경(管徑)이 700밀리미터 이상인 것만 주요지하시설물로 보던 것을, 앞으로는 관로시설의 관경 제한을 없애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중 열수송관을 주요지하시설물로 추가함.

바. 많은 사람이 소유하는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방법 개선(안 제43조제1항)

- 1)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수인이 소유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으면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사. 점용료 반환 절차 및 방법(안 제4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 1)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점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의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함.

### 3.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 단서, 별표 1의2 제1호아목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2호, 제28조제5항, 제31조제3호, 제62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공포 2012.11.27, 시행 2012.12.02]

### **1.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행교통연구센터를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1470호, 2012. 6. 1, 공포, 12. 2. 시행)됨에 따라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저상(底床)버스를 도입하는 경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을 정하며,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한 보행교통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절차 마련(안 제10조의2 신설)

- 1)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안을 공고하고 14일 이내에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반영 여부를 검토

하여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나. 저상버스 도입 비용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 마련(안 제14조제2항 신설)

- 1)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경우에 재정 지원의 부담비율에 관하여 특별시는 국가가 40퍼센트, 지방자치단체가 60퍼센트를 부담하고,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재정지원을 하도록 함.

다. 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 19조의2 신설)

- 1) 보행우선구역 사업 지원을 위한 전국적 조직망을 구축하는 등 보행교통연구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요건을 규정하고, 지정된 기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우선구역 사업을 활성화함.

## 2.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8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 2012.11.23, 시행 2012.11.23]

### **1. 개정이유**

소금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소금산업에 관한 다양한 진흥시책과 천일염인증제도 등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염관리법」이 「소금산업 진흥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1101호, 2011. 11. 22. 공포, 2012. 11. 23. 시행)됨에 따라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범위, 소금제조업 시설기준, 소금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안전성 조사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안 제4조)

- 1) 법률에서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금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염전의 현황 및 환경, 천일염의 제조·가공 기술 현황 등에 대하여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소금연구센터의 설치·운영(안 제6조)

- 1) 전문적인 연구환경에서 소금 및 소금가공품의 품질향상 등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소금연구센터를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소금제조업의 시설기준 마련(안 제8조)

- 1) 현행 천일염제조업의 경우에는 저수지, 증발지 등 제조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외에 해당 시설의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 2) 위생적이고 안전한 소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염전의 구조, 저수지의 취수구, 결정지(結晶地)의 바닥 소재, 소금창고의 덮개 등 각 시설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

라. 안전성 조사의 기준 마련(안 제10조)

- 1)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천일염과 이를 가공한 소금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그 제조에 사용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성 조사의 기준으로서 조사체계, 조사시기와 주기 등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의 대상지역, 조사대상 시료의 채취 방법 및 분석방법 등을 정함.

###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9]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규칙**

[공포 2012.11.15, 시행 2012.11.15]

###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시설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에 기초번호판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법률 제10987호, 2011. 8. 4.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초번호판의 종류, 설치기준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종류에 기초번호판 추가(안 제3조제4호 신설)

- 1)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종류에 기초번호판을 추가하고, 기초번호판을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이용하여 건물이 없는 장소와 교통신호등 등 도로시설물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으로 정의함.

나. 도로명판의 종류 및 표시 사항(안 제4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안 제5조제1항)

- 1) 도로명판의 종류에 도로명판이 안내하는 내용에 따라 이면(裏面)도로용 도로명판과 예고용 도로명판을 추가하고, 이면도로용 도로명판의 표시 사항에 현 지점에서 안내하는 이면도로까지의 거리를 추가함.

다.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지주와 부속물의 제작기준(안 제8조제3호 신설)

- 1) 강한 바람이나 태풍 등으로 인해 도로명판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명판의 설치에 필요한 지주와 도로명판의 부속물은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제품을 사용하여 지역별 기본풍속 및 최대풍속 등을 고려한 구조설계 결과에 따라 제작하도록 함.

라. 기초번호판의 종류와 표시 사항 등(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신설)

- 1) 기초번호판을 설치 장소에 따라 일반용 기초번호판, 동·리명 표시용 기초번호판, 도로시설물용 기초번호판, 승강장용 기초번호판으로 구분하고, 사용 대상에 따라 보행자용 기초번호판과 차량용 기초번호판으로 구분함.
- 2) 기초번호판에는 한글 도로명, 로마자 도로명, 기초번호, 동·리명 또는 상징물을 표시하도록 하되, 로마자 도로명과 동·리명 또는 상징물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3) 기초번호판은 도로구간 내에 건물이 없는 장소, 가로등 등 도로시설물이 설치된 장소, 승강장 등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함.
- 4) 기초번호판은 보도 및 차도의 진행방향에서 정면으로 볼 수 있도록 설치하고, 설치높이는 지면으로부터 기초번호판의 밑단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1.6미터 이상 1.8미터 이하로 하는 등 기초번호판의 설치방법을 정함.

###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공포 2012.12.04 시행 2012.12.22]

## 1. 개정이유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광고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법률 제11410호, 2012. 3. 21. 공포, 12. 22. 시행)됨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정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를 할 때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여신전문금융회사 총자산의 범위 설정(안 제2조의5 신설)
  - 1)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형확대 위주로 경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 총자산의 범위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액으로 정함.
- 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및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기준 마련(안 제6조의12 및 제6조의13 신설)
  - 1)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보호를 위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영세한 중소기업 신용카드 가맹점의 기준은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정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가 금지되는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은 직전 연도 1년 동안 신용카드 등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정함.

다.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행위 규제(안 제19조의14 및 별표 1의4 신설)

- 1)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여신금융상품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신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에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명칭, 상품명, 연회비, 연체료율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여신금융상품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등 여신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시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

### **3.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1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 2012.11.23, 시행 9999.1.1]

## **1. 제정이유**

선박평형수와 그 침전물에 포함된 유해수중생물의 영향으로 해양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의 주요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법률 제8788호, 2007. 12. 21. 공포, 협약 발효일부부터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664호, 2011. 2. 9. 공포, 협약 발효일부부터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선박평형수 처리기준, 선박평형수관리설비에 대한 검사 및 형식승인 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선박평형수 처리기준(안 제13조)

- 1) 선박평형수에 포함된 유해수중생물의 영향으로 해양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크기가 5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수중생물은 1세제곱미터당 10개 미만으로, 최소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이고 50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수중생물은 1밀리리터당 10개 미만으로 처리된 선박평형수를 항만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박평형수 처리기준을 정함.

나. 선박평형수관리설비에 대한 검사절차(안 제22조부터 제 28조까지)

- 1) 선박평형수관리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 검사의 절차, 시기, 첨부서류 등을 정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함.

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형식승인(안 제29조부터 제 34조까지)

- 1)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형식승인시험기준을 정하고, 형식승인시험 신청 절차, 형식승인서의 발급 절차 및 형식 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을 정함.

### **3. 시행일**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12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공포 2012.11.30, 시행 2012.12.3]

### **1. 개정이유**

- 가. 인지 납부 및환급 절차에 대한 전자적인 관리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은행납부번호 활용, 영수필 통지서 폐지, 수입징수결정 실무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
- 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한 인지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시·군법원의 인지 납부방식을 변경하여 실물인지 첩부 이외에 현금납부, 신용카드 등을 통한 납부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
- 다. 그 밖에 해석상 논란이 있는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함

### **2. 주요내용**

- 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한 인지납부방법 도입(제2조제2항)
  - 1) 송달료에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한 납부방법이 도입되어 있음
  - 2) 민원인의 편의와 수납은행이 입점해 있지 않은 시·군법원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한 인지납부방법을 도입함
- 나. 은행납부번호 기재방식 도입 등(제2조제2항)
  - 1) 인지 납부정보의 전산관리 방식 도입에 따라 영수필확인서의 첩부 대신에 은행납부번호를 기재하면 관련 정보의 특정이 가능함

- 2) 인지액을 납부하고 은행납부번호를 기재하거나 현금자동 입출금기를 통해 인지액을 납부하고 그이용명세표를 첨부한 경우, 위납부번호기재나 이용명세표를 영수필확인서로 보도록 함

다. 영수필확인서 소인 생략(제2조제3항)

- 1) 인지 납부 및 환급 정보의 전산관리로 인하여 과오납금 반환 또는 인지환급 신청 시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고, 영수필확인서의 재사용 위험성도 사라짐에 따라 소인이 불필요함
- 2) 실물인지를 첨부한 경우에만 소인하도록 함

라. 시·군법원의 인지 납부방식 변경(제27조제3항, 제4항)

- 1) 민원인의 편의 도모 및 관련 업무의 전산화 성과를 반영하여 실물인지 첨부 이외에 현금납부, 신용카드 등을 통한 납부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
- 2) 다만, 인지액이 10만원 이상인 사건은 환급사유 발생 시 환급편의를 위해 현행 현금 납부 원칙을 유지함

마. 인지수납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납부절차 개선(제29조)

- 1) 인지수납업무의 전산처리로 인하여 현금영수필통지서를 폐지함(제1항 내지 제4항)
- 2) 영수필확인서와 영수필통지서의 대조·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은행납부번호를 전산 등록하도록 하며, 시·군법원 접수 사건의 소송으로의 이행시 관할법원의 접수담당법원 사무관등의 전산등록 역할을 반영함(제3항, 제4항)

- 3) 인지의 현금수납 온라인 관리방식 도입에 따른 수납은행, 인지납부대행기관, 관리은행의 수납 정보 인계 등 역할을 각 반영함(제5항, 제6항)

바. 수입징수결정 규정 정비(제30조)

- 1) 수입 징수관은 인지액의 수납정보를 근거로 수입 징수 결정을 함(제1항)
- 2) 수입 징수결정의 근거로 되는 수납정보가 정정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사건의 법원사무관등에게 통지 하도록 함(제2항)

사. 과오납으로 인한 반환청구시 첨부서류의 명확화(제32조 제2항)

- 1) 현행 규정상 반환청구 시과오납 확인서와 인지납부 영수증의 첨부가 선택적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2) 인지납부 영수증은 납부정보의 전산관리로 인하여 불필요 하기 때문에 인지납부 영수증의 선택 적첨부를 삭제함

### 3.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현금자동입 출금기를 통한 납부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① 경상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 35
- ② 경상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 39
- ③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 46
- ④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 조례 ..... 53
- ⑤ 부산광역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61
- ⑥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 ..... 70
- ⑦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 86

# **1] 경상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 **1. 제정 이유**

경상북도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도지사는 도민의 자율적인 재능나눔 여건을 조성하고, 재능나눔 사업을 장려 및 지원하도록 노력함.(안 제3조)
- 나. 도지사는 재능나눔 사업의 체계적인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재능나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4조)
- 다. 도지사는 재능나눔에 참여하거나 재능나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안 제6조)

## **3. 조 례 안 : 붙임참조**

## **4. 관련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5조의3**

## 경상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을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재능나눔 활동을 장려·지원함으로써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도민의 문화예술 재능나눔을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능나눔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추진) 도지사는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2. 공공 문화시설의 재능나눔 공간 확보 및 실비 지원
3. 재능나눔 관련 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 및 지원
4. 재능나눔 관련 도민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재능나눔 활성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능나눔 사업의 위탁에 관해서는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6조(포상) 도지사는 재능나눔에 참여하거나 재능나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경상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

### **1. 제정 이유**

- 기존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에너지절감정책을 선도하고 대정전사태 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사전적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절전운동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고
- 민간 LED조명시장을 활성화하여 지역 내 LED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조례제정을 통해 경상북도의 LED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에너지절약에 대한 범도민 인식전환을 통해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LED조명 보급 촉진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나.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보급 촉진(안 제5조, 제6조)
- 다. 추진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라. 지역생산제품의 구매(안 제8조)
- 마. LED조명 보급 촉진위원회 설치(안 제9조)

### **3. 조 례 안 : 붙임 참조**

### **4. 관련법령**

-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제3조, 제8조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시행령」 제15조

## 경상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며, 도내 LED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LED(발광 다이오드)조명”이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 및 조명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에너지 선도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LED조명 보급 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LED조명 보급의 필요성
2. LED조명 산업 현황 및 보급 현황
3. LED조명의 신규 설치 및 교체에 대한 수요조사
4. LED조명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
5.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LED조명의 보급을 위한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
7. 국제사회와의 정보교류 및 연대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정부의 관련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부문의 보급 확대)** ① 도지사는 관공서 등 공공건축물, 가로등, 경관조명 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 법인 등에게 LED조명의 보급 확대시행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도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 법인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제6조(민간부문의 보급 촉진)** ①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LED조명으로 설치 또는 교체 필요성이 높은 시설의 필요한 자금의 일부보조

2. LED조명 교체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도지사가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추진협의체)** 도지사는 LED조명 보급 확대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회적 협력망 구축을 위해 생산자 단체,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도민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역생산제품의 구매)** 도지사는 LED조명 교체 시 지역 생산 LED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한다.

**제9조(LED조명 보급 촉진위원회)** ① 도지사는 LED조명 보급 촉진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심의를 위해 LED조명 보급 촉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에 따른 에너지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5조에 따른 공공부문 확대 계획
3. 제6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금 등의 지원
4. 제7조에 따른 추진협의체 구성
5. 그 밖에 LED조명 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홍보활동)** ① 도지사는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LED 조명의 보급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에너지절약 관련 단체 또는 도의 공기업 및 출자·

출연 법인 등에게 LED조명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홍보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기술 개발 및 보급 촉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해 포상 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에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그기자재와 설비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여야 하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시행령

제15조(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시책의 마련 및 정비
2. 에너지의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홍보 및 교육
3. 건물 및 수송 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 경상북도 LED조명 보급촉진 조례안

#### 1. 재정수반요인

- 경상북도 LED 조명 공공·민간 확대 보급 사업비 등
  - LED 조명 신규설치 및 교체비 등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3. 미첨부 사유

- 경상북도 LED 조명을 공공 및 민간에 대한 신규설치 및 교체비 등 사업비는 경상북도·시군간 협의하고 의회의 승인 수반되어야만 하는 사항으로
- 경상북도 LED 조명 보급 기본계획 수립 후('13. 9월 예정) 비용의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3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 **1. 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4조)
- 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안 제7조)
- 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목표
2.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4.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사업
4.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변경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모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노숙인 등 보호,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 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나. 「아동복지법」
  - 다. 「노인복지법」
  - 라. 「장애인복지법」
  -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 바. 「영유아보육법」
  -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 「정신보건법」
  -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차. 「입양특례법」
  -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더. 「의료급여법」
  - 러. 「기초노령연금법」
  - 머. 「긴급복지지원법」
  -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 서. 「장애인연금법」
  -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3조제3항 관련)

#### 1. 비용발생 요인

-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에 따라 재정소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2. 미첨부 근거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임.

## **4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 조례**

---

### **1.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택시 인프라를 개선하여 시민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유지시킴으로써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 택시기본 조례가 시민의 복리 증진에서 더 나아가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임을 밝힘(안 제1조)
- 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으로 하고, 조례의 기본방향을 정하며 시장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시민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함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 다. 택시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하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 라. 택시정책의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한 인천광역시 택시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마. 택시정책위원회 및 주무부서는 택시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안 제15조)

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안 제16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 택시 운송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본방향) ① 택시정책은 택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택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택시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한다.

②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택시 서비스의 개선과 택시업계 경영 합리화를 우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③ 택시 활성화 기반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택시개혁을 통하여 인천형 택시 모델을 만들어 택시정책을 선도한다.

④ 택시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이해당사자, 관계 전문가 등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 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택시 운송사업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운수종사자 안정적인 수급 지원,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복지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정착,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6조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준수사항과 같은 법 제23 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쾌적하고 친절한 택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택시이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7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현 택시산업의 실태 및 문제점
3. 기존 택시정책의 추진실적 평가
4.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6.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택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합법적인 계획수립 등을 하기 위하여 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② 시장은 택시 운영·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한 택시 운행실태 분석 및 택시정책의 평가와 당사자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운송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후생복지 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택시 실태와 시책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이용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택시정책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자
2.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원
3. 교통업무 소관 국장

②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규정은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따른다.

제15조(업무의 협조) ① 주무부서는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택시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표창)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수종사자, 시민,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에 필요한 다른 규정은 「인천광역시 포상조례」를 따른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택시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 인천광역시 택시기본 조례 (제3조제3항 관련)

#### 1. 비용발생 요인

- (제9조제2항)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제10조)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연차별로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제14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3. 미첨부 사유

- ‘제9조제2항’ 과 ‘제10조’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현시점에서 재정소요를 추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우며,
- ‘제14조’는 예상되는 비용이 소액이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5 부산광역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1. 제정 이유**

- 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행위 근절과 건전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하도급 거래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건설산업의 상생협력기반 구축 및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등
- 나. 건전한 신고문화 도입으로 건설산업의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건설공사의 발주기관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의료원
- 나. 불법하도급의 신고는 신고자가 직접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안제5조 제1항)

## 부산광역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비리를 근절하여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하도급”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3. “불법하도급”이란 법 제25조 및 제2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신고 대상 및 방법) 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하도급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써 불법하도급이 이루어진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의료원

② 불법하도급을 신고하려는 시민(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제

1호서식의 불법하도급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불법하도급신고 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불법하도급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하도급 신고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신고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부서 또는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발주부서 또는 발주기관은 불법하도급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의 보완요청)**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불법하도급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급 대상 및 기준)**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② 신고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하고, 최초 신고자가 공동일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신고포상금은 2천만원 이내로 하되,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급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신고사항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사

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외부기관 또는 감독기관이 인지하여 조사 중이거나 처분이 완료된 경우
3.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해당 공사 관계자와 사전에 공모하여 신고한 경우
4. 신고자가 신고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5.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6. 그 밖에 부산광역시불법하도급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신고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급 결정 및 통지 등)** ① 시장은 부산광역시불법하도급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7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정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신고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포상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신고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불법하도급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신고포상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부산광역시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2조(신고센터 설치) ① 시장은 불법하도급 신고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불법하도급신고센터를 둔다.

② 부산광역시불법하도급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7조제3항 관련)

(단위 : 만원)

| 제 재 기 준  |              |             |                | 신고포상금<br>지 급 액                    |
|--|--------------|-------------|----------------|-----------------------------------|
| 위 반 행 위  | 근거 법조문       | 영업정지<br>기 간 | 과징금<br>금 액     | (개별처분에 대한<br>과징금 산정액의<br>7퍼센트 이내) |
| 1.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법제82조제2항 제3호 | 8개월         | 1,500 ~ 24,000 | 1,680 이내                          |
| 2.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 법제82조제2항 제3호 | 6개월         | 1,200 ~ 18,000 | 1,260 이내                          |
| 3.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한 경우 | 법제82조제2항 제3호 | 6개월         | 1,200 ~ 18,000 | 1,260 이내                          |
| 4.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법제82조제2항 제3호 | 4개월         | 800 ~ 12,000   | 840 이내                            |
| 5. 재하도급금지규정에 위반하였으나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 법제82조제2항 제3호 | 4개월         | 800 ~ 12,000   | 840 이내                            |

## 불법하도급 신고서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                 |              |        |  |
|------|-----------------|--------------|--------|--|
| 신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
|      | 연 락 처           |              | e-mail |  |
| 피신고자 | 원도급업체           | 업 체 명(대표자) : |        |  |
|      |                 | 현장대리인(연락처) : |        |  |
|      | 불법하도급을<br>한 업체  | 업 체 명(대표자) : |        |  |
|      |                 | 현장대리인(연락처) : |        |  |
|      | 불법하도급을<br>받은 업체 | 업 체 명(대표자) : |        |  |
|      |                 | 현장대리인(연락처) : |        |  |

### 신 고 내 용

|              |  |
|--------------|--|
| 1. 공 사 명     |  |
| 2. 발 주 기 관 명 |  |
| 3. 공사현장 주소   |  |

4. 신고내용(별지 추가작성 가능)

|               |  |
|---------------|--|
| 증거서류<br>(첨 부) |  |
| 기타사항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불법하도급 신고 관리카드

|                   |      |     |       |
|-------------------|------|-----|-------|
| 접수번호              | 20 - | 접수일 |       |
| 신 고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 주 소  |     | 연 락 처 |
| 불 법<br>하도급<br>유 형 | 내 용  |     |       |
|                   | 거래자  |     |       |
|                   | 단 계  |     |       |
| 위반업체              |      |     |       |
| 발주기관              |      |     |       |
| 처분기관              |      |     |       |

### 신 고 내 용

1. 공 사 명 :
2. 현장위치 :
3. 신고내용 :

|                   |  |
|-------------------|--|
| 처리결과              |  |
| 기타사항<br>(포상금지급 등) |  |

· 210mm × 297mm(일반용지 75g/m<sup>2</sup>)

## **6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

### **1. 개정 이유**

- 동 조례는 서울을 국제 경쟁력을 가진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정책을 비롯하여 문화관련 주요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나 동 조례는 특정단체인 「서울문화포럼」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축제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문화예술 축제의 육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 별도로 운영되는 등 문화 관련 조례의 체계가 복잡함.
- 또한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고, 각 자치구는 지방문화원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시는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일부 예산을 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관련 조례가 없는 상태이므로 동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지방문화원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축제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문화관련 조례의 체계를 정비 하려는 것임.

### **2. 주요 개정 내용**

- 가. 현행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의 주요 사항을 정리 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18조).

- 나.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른 자치구 문화원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제24조)
- 다. 현행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축제의 육성에 관한 조례」의 주요 사항을 정리하여 규정함(안 제25조~ 제29조).
- 라. 현행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의 주요 사항을 정리하여 규정함(안 제30조~ 제4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 타 : 없음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을 인간중심적인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복지를 실현하고 국제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시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자율적으로 문화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실현하여 시민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적 정체감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가.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의 구현

나. 인간중심의 쾌적한 도시공간의 조성

다. 기본적인 문화향유가 보장되는 문화복지의 실현

라.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진흥

마. 더불어 함께 사는 시민문화의 정착

2. “문화예술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라 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자치구 또는 민간에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로

서 시민화합 및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문화적·예술적 또는 민속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3. “지방문화원”이라 함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문화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이하 “문화도시정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시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별·문화예술 분야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전통과 현대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는 서울의 문화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 **제2장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

**제6조(문화예술의 육성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제7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예술적·미학적으로 조성하고, 서울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복원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친환경적인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보존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문화복지의 증진)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활동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한다.

제9조(문화산업의 육성) 시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기술·인력·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10조(시민문화의 정착) ① 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시민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문화 관련 교육이 편성되도록 노력한다.

### 제3장 문화도시정책의 추진체계

제11조(문화도시발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하 “문화도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의 각종 사업계획에 문화도시종합계획이 반영 되도록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권고할 수 있고, 관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민의 의견수렴) 시장은 문화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일반 시민 및 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4장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

제13조(목적 및 기능)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 구현 및 문화예술진흥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의 문화도시 구현 및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자문 및 사업제안
2. 문화도시 및 예술진흥 정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자문
3. 제26조 규정에 따른 축제의 운영(신설 및 폐지, 시기의 변경 및 개최 등) 및 제27조 규정에 의한 민간축제에 대한 지원에 관한 심의 및 자문
4. 그 밖에 문화도시 구현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문화 관련 민간전문가 및 시민단체, 일반 시민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문화정책, 축제, 문화재, 체육을 포함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13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각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별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소집하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제13조에 규정된 사안에 대하여 심의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시장이 소집한다.

② 시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장소·안전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자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장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의 지정과 육성

제19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②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활동중인 비영리법인·단체
2. 예술단·공연장·미술관·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이고 독립채산이 가능한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법인·단체
3.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4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2. 재정 운영의 건전성
3.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 시설의 운영 실적
4. 공연·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5. 재능기부 등 사회적 기여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문예술법인·단체 심의위원회”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회의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2명 이내
2. 서울특별시교육감 추천하는 자 1명
3. 문화예술분야에 조예가 깊고 덕망있는 자

**제20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취소)**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시장은 지정된 전문 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전시실적이 연 1회 미만인 경우
3.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전시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전시·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②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지정과 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과 육성)** 시장은 지정된 전문예술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장 지방문화원의 육성

제22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자치구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문화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구청장은 지방문화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력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2. 지방문화원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

제23조(지방문화원의 기능과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개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의 발굴, 수집, 조사, 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
8.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그밖에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는 해당 자치구에서 조례로 정한 사업에 한한다.

제24조(지방문화원 지원) 시장은 지방문화원에 대하여 제23조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장 문화예술축제의 육성

제25조(축제의 육성) 시장은 시민 참여적이고 국제적인 축제의 육성·발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축제개최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울의 대표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민간축제의 지원) 시장은 민간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축제개최자에게 개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축제사무의 위탁 등) 시장은 제26조에 따른 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대행토록 할 수 있다.

제29조(축제의 평가) ① 시장은 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제시책·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그 공정성·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평가(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축제사무의 수탁자에 의한 평가를 제외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자체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 제8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제30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시장이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2항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

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가 16층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층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1. 공동주택(다만, 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 제9장 미술작품의 설치

제31조(미술작품의 설치절차)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술작품 수준향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건축주에게 공모를 통해 작품을 제작·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가 관할지역 허가권자에게 공모를 요청할 시에는 작품의 공모 및 작품선정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시설의 건축물을 건립하거나 공원을 조성할 때 미술작품 등 공공미술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시장과 시 출자 또는 출연한 지방공기업 및 법인의 장은 공공미술 응모작품들의 평가 및 선정을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미술작품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 후 시장에게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한 경우에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서울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시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31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33조(미술작품의 사후관리)** 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나 이를 위한 철거 또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물 사용승인 시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현장확인 또는 건축주의 신고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미술작품의 가격결정 등)** ① 미술작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 또는 그 대행인 간의 미술작품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 건축주가 기증품이나 소장품을 미술작품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가격은 전국단위로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을 하고 있는 법인 등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은 금액으로 한다.

**제35조(공동주택의 미술작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에 따른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10장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제36조(기능) 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작품의 예술성(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2. 미술작품의 환경과의 조화성(환경과의 친화성, 설치 위치의 적절성)
3. 미술작품의 공공성
4. 미술작품의 안정성 및 보존성
5.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6. 미술작품과 건축물과의 조화
7. 미술작품 가격의 적정성
8. 그 밖의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의 기여도 등

②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작품의 예술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주 및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미술작품을 공공장소 및 특정장소에 설치토록 할 수 있다.

제37조(구성 및 임기) ①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경관·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5명
3.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3명
4. 그 밖에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

- ③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회의는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번제로 운영한다.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제31조제3항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해 미술작품선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⑦ 미술작품선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39조(회의의 운영)**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장 보 칙

**제4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0조에 따른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2. 제31조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고지,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제작·설치권장 및 미술작품설치계획서 접수 관련 업무
3. 제32조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확인
4. 제33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축제의 육성에 관한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 **7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

### **1. 개정 이유**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사회적가치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고,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 및 학생이 그 사회적가치를 제고하는데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교육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사회적기업 등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등의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다. 교육감은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사회적기업등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우선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 대부 등에 관한 사항
  -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
- 라. 교육감은 사회적기업등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고,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마. 교육감은 소관 재산 및 물품을 사회적기업등에 기부하거나 사회적기업등과 결연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하는데 기여한 학교에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바. 교육감은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 및 학생의 이해 증진과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사회적기업등의 사회적가치에 대한 교육
  - 사회적기업등과 사회적기업제품의 홍보
  - 사회적기업등과 학생 자원봉사와의 연계 등을 통한 인식 확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입법예고(2012. . . ~ . .) 결과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사회적가치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 및 학생이 그 사회적가치를 제고하는 데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을 받아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사회적기업등”이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
4. “사회적기업등제품”이란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사회적가치”란 사회적기업이 이윤의 사회적 환원, 윤리적 경영 문화 확산, 착한 소비문화 확산 등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직속 기관·지역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사회적기업등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등의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산광역시장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등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제5조에 따른 우선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대부 등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교육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우선 구매)** ① 교육감은 사회적기업등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등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각급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제공할 수 있다.

**제6조(대부 등)** ① 교육감은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 및 물품을 사회적기업등에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회적기업등과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한 학교에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등) 교육감은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 및 학생의 이해 증진과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등의 사회적가치에 대한 교육
2. 사회적기업등과 사회적기업제품의 홍보
3. 사회적기업등과 학생 자원봉사와의 연계 등을 통한 인식 확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최근 중앙정부의 주요 동향

## 최근 중앙정부의 주요 동향

- ①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 화장실 대기시간 줄어든다 ..... 93
- ② '아리랑'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확정 ..... 101
- ③ 농어촌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 대폭 확대 ..... 103
- ④ 내년부터 수형자에게 맞춤형 교정교화로 재범방지 노력 강화 ..... 104
- ⑤ 장애인용 공중화장실도 남·녀 구분해 설치하도록 권고 ..... 106
- ⑥ '13년부터 5개 국립병원에 학교폭력 치료·상담센터 운영 ..... 109
- ⑦ 발주계획부터 대가지급까지 지방계약 전 과정 공개한다 ..... 111
- ⑧ 우수 쌀가공식품 온라인 판매 활성화 추진 ..... 113
- ⑨ 요양병원 옥석 가린다 ..... 117

# ①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 화장실 대기시간 줄어든다

- 행안부, 부처 합동으로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발표 -

- ◇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의 여성화장실 변기 수가 남성 화장실의 1.5배 이상으로 설치되고, 내년부터 주류에 음주경고 문구의 크기가 확대된다.
- ◇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합동으로 국민편의 제고와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13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 ◆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 화장실 확대

- ◆ 주말에 자주 아이들과 교외지역으로 여행가는 A씨. 기분 좋게 시작한 가족 여행이 고속도로 휴게소만 들르면 짜증으로 변하기 일쑤다.
  - 짜증의 원인은 바로 화장실 때문. 잠시 다녀오겠다는 아이 엄마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남자화장실은 그렇지 않은데, 여자 화장실은 항상 밖에까지 줄이 길게 서있다. 명절 때가 되면 기다리는 시간은 더욱 길어져 한숨만 난다.
- ◆ 고속도로 휴게소의 여자화장실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 화장실 앞의 길게 늘어진 줄은 혼한 광경이다.
  - 여성들은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남성들은 화장실에 간 여성 가족들을 기다려야 한다.
  - 여름 휴가철, 명절 뿐 만 아니라 최근에는 주말에도 고속도로 여성 화장실 이용의 불편함은 일상적인 일이 되고 있다.
- 해외에서는 여성 화장실을 남성용 보다 2배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화장실 평등(Restroom Equity) 개념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 여성은 생리적 차이·자녀동행 등으로 화장실 이용시간이 남성보다 2배 이상 길다는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것이다.
- 캘리포니아·플로리다·일리노이·뉴욕 등 미국 대부분의 주와 홍콩·싱가포르·뉴질랜드 등에서도 여성용 화장실을 더 많이 만들도록 하고 있다.

〈붙임〉 화장실 남녀 설치 비율 해외 현황

- 우리나라는 2004년 남녀 화장실 변기 수를 동일하게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 2006년에는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관람장·전시장 등에 대해서는 남녀 변기 수 비율을 1:1.5이상이 되도록 강화했다.
  - 그러나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여성들뿐만 아니라 동행하는 가족들도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 앞으로는 고속도로 휴게소도 남녀 변기수를 1:1.5 이상이 되도록 해 시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의 명절 고향방문 및 주말여행이 좀 더 즐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 ◆ 주류, 과음 경고문구 크기 확대

◆ 담뱃갑에 흡연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을 본 B씨. 왜 주류에는 이와 같은 경고문이 없을까 생각하며 술병을 살펴보니, 하단에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경고문안을 발견했다.

- 주류 상품에 과음 경고문구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 정부는 지나친 음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경각심을 주기 위해 주류 상품에 경고 문구\*를 넣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글자 포인트가 작다\*\*보니 막상 소비자들이 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 경고문구 : 「①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②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③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명기

\*\* 300ml 미만은 7포인트, 이상은 9포인트 이상

- 과도한 음주는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주취상태에서 폭력·강간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 이에 정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주류 과음 경고문구 글자 크기를 확대할 예정이다.(구체적 글자 크기는 추후 결정)

\* 한국소비자연맹 조사결과 음주 위해 경고를 본다면 「49.5%는 술 마시는 것을 조금은 자제해야겠다, 10.7%는 술을 먹지 말아야겠다」라고 답변(2006년)

- 국민들이 좀 더 쉽게 경고 문구를 인지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음주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 ◆ 기차 지연 정보, 스마트폰으로 확인한다.

◆ 기차역에서 20분 쯤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C씨. 추운 날씨에 지연 열차를 마냥 기다리는 것이 답답하기만 하다.

- 버스 앱처럼 열차 지연상황이나 사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생각했다.

-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기차표를 예매하고 있다.
- 내년 하반기부터는 기차 사고 등으로 연착되는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승객들의 기차이용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 ◆ 장애학생에 대한 배려, 더욱 세심해진다

#### < 장애학생 봉사활동 예외 인정 >

-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초·중·고에서는 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 좋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에게는 봉사활동이 적지 않은 부담이다.
- 내년부터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 개정을 통해 각급 학교에서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특성을 고려, 자율적으로 장애학생의 수준에 맞는 대체 봉사활동 부여 등 시간 예외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 청각장애인 자막방송수신기 신청서 구비서류 간소화 >

- 앞으로는 청각장애인이 읍·면·동에서 신분 확인 후,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막방송수신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그 동안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대상자를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증명서를 요구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해 왔다.

- ◇ 김상인 조직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고속도로 여성 화장실 확대, 기차 지연 정보의 스마트폰 확인 등과 같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낀 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해외 동향

- 과거에는 남녀 동일한 비율(1:1)의 화장실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 최근 여러 연구에서 남녀의 생리적인 차이 뿐만 아니라 자녀 동행과 같은 인구학적 요인 등으로 인해 여성의 화장실 이용 시간이 남성보다 평균 2배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남녀 동등한 대기시간 등을 고려할 때 여성 화장실을 남성용보다 2배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Restroom Equity 개념이 확산되고 있음

## □ 주요 해외사례

- 미국은 연방차원에서 남녀 화장실 비율을 규정하지 않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주나 도시 차원에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 1987년 캘리포니아 주를 선두로 플로리다, 일리노이, 뉴욕, 펜실베이니아, 테네시, 텍사스, 위스콘신, 메릴랜드 등은 남성보다 더 많은 여성 화장실을 짓도록 규정
    - \* 플로리다(3:2), 펜실바니아·테네시·텍사스(2:1) 등
  - 뉴욕시의 경우 2005년에 콘서트홀이나 경기장 등에서 화장실을 새로 만들거나 증축할 때 여성용을 남성용의 두배 이상 짓도록 법안 수정 (Local Law No.57 of 2005)
    - \*전에는 1:1비율로 짓도록 했음
- 중국 광조우 도시관리위 원회는 새로 짓거나 개량하는 여성 화장실이 남성 화장실의 1.5배 크기가 되도록 지시(2011.3월)
-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도 여성화장실을 더 많이 만들도록 규정화
- The International Building Code(IBC)는 경기장, 콘서트홀 등 공공장소에서 남성용보다 대략 2 배 이상의 여성용 화장실 시설을 마련하도록 규정

**참고2**

**'12년 제3차 행정제도 개선(안) 과제 목록 및 추진계획**

□ **2개 분야 13개 행정제도 개선**

| 계  | 국민편의 제고 | 생활안전 강화 |
|----|---------|---------|
| 13 | 7       | 6       |

**1. 국민편의 제고 분야**

| 개 선 과 제 |                         | 추진 계획   |
|---------|-------------------------|---|
| 1       | 고속도로휴게소 여성 화장실 확대       |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 화장실 변기수를 남자의 1.5배 이상으로 확대하여 여성 이용자 및 가족 불편 최소화<br>*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3년)            |
| 2       | 철도 이용객을 위한 스마트폰 서비스 확대  | □열차 사고 등으로 인한 기차 지연 등의 운행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br>* 기차 앱(글로리) 프로그램 개발('13년 상반기)                     |
| 3       |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수신기 신청절차 개선 | □청각장애인 자막방송 수신기 신청서류 간소화 및 읍면동 공무원의 업무편의를 위해 신청서식 변경<br>* 2013년 방송수신기 보급 사업 반영('13년 상반기)                  |
| 4       | 장애 학생(특수교육대상자)의 봉사활동 배려 | □봉사활동시간이 일반학생과 동일한 장애학생(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대체 봉사활동 부여 등 시간인정 예외 규정 마련<br>* '봉사활동 운영기본 계획' 수립시 반영 권고('13년 상반기) |
| 5       | 관공서의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절차 개선   | □인사발령이 잦은 관공서의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시 대표자명 대신 기관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br>*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13년)                         |
| 6       | 보호소년 교육성과 가점 세부기준 마련    | □보호소년 중 전국대회 입상자에 대한 교육성과 가점 세부기준 마련<br>* 「보호소년 처우지침」 개정('12년 하반기)  |
| 7       | 국유재산 사용료 등 소액 징수 면제     | □국유재산 사용료 등 징수 비용을 고려하여 금액이 소액인 경우 징수 면제<br>* 「국유재산법」 개정('13년)  |

## 2. 생활안전 강화 분야

| 개 선 과 제 |                           | 추 진 계 획  |
|---------|---------------------------|--|
| 1       | 주류 경고문구 글자 크기 확대          | □과도한 음주가 유해하다는 점을 국민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주류 경고문구 글자크기 확대<br>*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13년)             |
| 2       | 유독물 취급시설 검사 전문성 확보        | □유독물 취급시설 검사기관을 현행 지자체에서 안전 진단 전문기관으로 변경하여 검사의 전문성 확보<br>*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13년)                |
| 3       |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 표시 방법 개선      | □앞·뒷면으로 분리·표기되어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 표지판을 하나로 통합하여 어디서나 보더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br>* 「상수원관리규칙」 개정('13년) |
| 4       | 정신성적 장애인 치료를 위한 촉탁의 제도 도입 | □성도착 등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소내에 촉탁의사를 두어 정신과 진료 및 치료 실시<br>*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13년)  |
| 5       | 도로변에 설치한 제설함의 체계적 관리      |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설치한 제설함에 고유번호 부여로 정비가 필요한 제설함 위치의 신속한 파악<br>* 각 도로관리청에 제설함 고유번호 부여 지시('13년 상반기)  |
| 6       | 중고건설기계 성능 점검사항 규정 강화      | □중고건설기계의 판매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성능 점검 기록부 유효기간 설정<br>*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3년)                        |

## ② ‘아리랑’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확정

---

- ◇ “아리랑”이 12.5(수)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유네스코 무형유산대표 목록으로 최종 등재가 확정되었다.
- 그간 우리 정부는 우리민족의 고유한 문화유산인 ‘아리랑’의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해왔는바, 금번 아리랑 등재는 국제사회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문화국가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금번 ‘아리랑’ 등재 결정으로 우리나라가 보유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은 종묘제례, 판소리, 강강술래, 강릉 단오제 등 총 15개로 증가하였다.
- ◇ 우리 정부는 2012.6월 ‘정선아리랑(2009년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신청)’을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아리랑’으로 확대, 수정한 무형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서를 대표하는 ‘아리랑’의 상징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금번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확정을 계기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아이콘이자 국가 브랜드로서 ‘아리랑’의 위상과 가치 제고는 물론 ‘국민의 아리랑’으로서 세대를 거쳐 재창조되고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는 아리랑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아리랑 등재에 관한 위원회 결정문(7.COM 11.27)은 아리랑이 한민족의 대표적인 민요로서 공동체의 정체성과

단결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고, 한국이 제출한 등재 신청서에도 아리랑 등재가 남북한 간 대화와 교류 증진 등 전세계 한민족간의 유대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 한편, 금번에 등재된 ‘아리랑’은 △대한민국 지역에서 통용되는 아리랑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무형유산협약상 등재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무형유산보호정부간위원회에 각 유산에 대한 등재 여부를 권고하는 심사보조기구도 만장일치로 ‘등재’ 권고 판정(금번 36개 심사 대상 중 2개만 만장일치 권고)을 한바 있다.
- ◇ 정부는 앞으로도 우수한 우리 문화를 국제 사회에 널리 알리고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무형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등 대유네스코 외교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3] 농어촌 페슬레이트 처리 지원 대폭 확대**

- ◇ 내년부터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대한 국고 보조와 철거 물량이 대폭 확대
  -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13년부터 30년 이상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 기준철거비를 인상(200 → 240만원)하고, 국고 보조율도 현행 30%에서 40% 수준으로 상향조정되며,
  - 아울러 철거물량도 '12년 1만동에서 '13년 1만5천동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힘
    - ※ 석면은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
  
- ◇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11년 시범사업을 거쳐 '12~'21년까지 총 188,600동의 철거를 지원할 예정이나, 그간 과도한 자부담이 사업추진의 애로사항으로 지적
  - 이번 조치를 통해 100㎡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의 경우 철거비 자부담이 기존 80만원에서 8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며,
  - 지원방식도 기존 정률에서 정액방식(가구당 96만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감에 따라 서민층의 사업참여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
  
- ◇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향후에도 슬레이트 철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철거물량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4 내년부터 수형자에게 맞춤형 교정교화로 재범방지 노력 강화**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자의 출소 후 10년 이내 재범률은 50%를 넘고 있으며,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은 70%에 이르고 있음
  - 이와 같이 강력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범죄자의 반사회적 성격 등 정신 병리적 문제뿐 아니라, 장기복역으로 가족관계 단절, 교도소 출소 후 취업·주거문제로 인한 자립실패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반사회적 범죄의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정책수단이 필수적”(선임연구위원 정진수)이라고 강조
-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교정교육강화 - 수형자의 가족해체방지 -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사회복귀 지원 - 출소 후 갱생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함으로써 효과적인 재범방지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 ◇ 성폭력사범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교정교화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12년 67억 → '13년 80억원)할 예정
  - 현재 성폭력사범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기본교육을 40시간 → 100시간으로 확대하고, 재범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교정심리치료센터에서 6개월간 300시간의 전문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함

- ◇ 장기간 수감된 수형자의 가족해체를 막기 위해 교도소 내에 가족 접견실 10곳을 설치(신규 5억원)
  - 수형자와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여 장기 복역으로 인한 가족해체를 방지하여 출소 후 재범방지에 한층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교도소내 근로작업 여건을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게(1일 8시간) 적용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도 강화하는 자립형 근로작업을 확대('12년 35개 작업장 → '13년 50개 작업장)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편성('12년 370 → '13년 408억원)함
  - 자립형 근로작업과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출소 이후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 감축효과가 기대됨
- ◇ 취약계층 출소자에 대하여 직업훈련·취업알선, 긴급원호 등 다양한 갱생보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12년 117→'13년 130억원)
  - 기술이 없거나 미숙련 출소자에게는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 지원과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고, 무연고 출소자에게 전국 22개소에 설치된 공단 생활관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식주를 지원하고
  - 출소자 자녀지원, 가족상담 및 치료,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가정복원 프로그램 및 가족지원사업을 통해 출소자 개인의 재범방지와 범죄 대물림의 악순환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

## 5 장애인용 공중화장실도 남·녀 구분해 설치하도록 권고

- 권익위, 장애인용 공중화장실 이용여건 제도개선 추진 -

- ◆ 장애인용 공중화장실 남·녀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규정 개선
- ◆ 사고 방지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바닥 재질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미끄럼방지타일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
- ◆ 시각·청각장애인이 공원 등의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부근 점자안내판, 음성안내장치, 기타 유도신호장치 설치 의무화

◇ 앞으로는 공원 등 공중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공용이 아닌, 남자용과 여자용 화장실로 구분해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는 장애인용 공중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다.
- 공공시설의 일반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남·녀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용 화장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불명확한 규정에 의해 실제 일부 공공시설에 남·녀 공용 화장실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 서울메트로 관할 117개 역사 138개 장애인화장실 중 남녀 미구분 설치 57개(45%), 한국철도공사 관할 전국 439개 역사 장애인화장실 중 남녀 미구분 설치 114개(26%), 서울도시철도공사 관할 148개 역사의 장애인 화장실 중 남녀 미구분 설치 35개(24%)로 나타남(언론보도 '12. 6.)

- 여성지체장애인이 지하철 역사 내 남·녀 구분이 되지 않은 장애인용 화장실을 이용하려다 입은 피해와 관련하여 ‘장애인 화장실 남·녀 분리’를 요구하는 공익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도 하다.

<남녀공용화장실 이용 장애인 피해 사례>

지체장애인 여성 A씨는 서울메트로 관할 000역사 내에서 남녀로 구분되지 않은 장애인용화장실을 이용하려는데, 술 취한 비 장애인 남성이 장애인 여성 A씨를 제지하고 욕설을 퍼붓는 등 위협을 가해 신변에 위협을 느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수치심을 느낌.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용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공익소송이 진행 중임(언론보도‘12. 10.)

- ◇ 또한, 국민권익위는 공중화장실의 바닥재질이 미끄러워서 생기는 장애인의 보행사고를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의 바닥재질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미끄럼방지타일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하도록 권고하였다.
-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시설의 경우 물청소이후 넘어지기 쉽고, 배수로 문제 때문에 바닥이 기울어 있으면 사고 위험이 더 커 장애인에게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1년간 접수된 바닥타일 미끄럼 사고 민원이 800건을 상회하고, 주로 노약자 및 어린이 사고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한국소비자원, 2012. 4.)

- ◇ 이와 별도로, 권익위는 시각장애인이 공원 같은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등 유도신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하였다.
- 참고로, 수도권 공원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의 유도 안내시설 조사결과, 조사대상 30곳 중 유도표시 미

흡이 22곳(73.3%), 점형블록 미설치가 17곳(56.7%), 점자표시 미설치가 14곳(46.7%)으로 조사된 바 있다.

□ 유도표시 미흡 30곳 조사 중 22곳(73.3%)

※ 유도표시가 없을 경우 시각장애인이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충돌이나 넘어짐 등 안전사고의 우려로 조속한 개선 필요

**안내시설 부적합 실태**

| 평가항목    | 조사대상 | 적합 | 부적합 | 부적합률 |
|---------|------|----|-----|------|
| 점 형 블 록 | 30   | 13 | 17  | 56.7 |
| 점 자 표 시 | 30   | 16 | 14  | 46.7 |
| 유 도 표 시 | 30   | 8  | 22  | 73.3 |

(수도권 공원 내 장애인화장실 30곳 실태조사, '12. 4. 한국소비자원)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대로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법령을 개선하면 장애인들이 공중화장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 **6 '13년부터 5개 국립병원에 학교폭력 치료·상담센터 운영**

◇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서울·강원 등 전국 5개 국립병원에 「학교폭력 정신건강 치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

\* 서울, 강원(춘천), 충남(공주), 전남(나주), 경남(부곡)

○ 이를 위해 '13년 정부 예산안에 25억원을 신규로 반영, 국회 상임위(복지위)를 통과하여, 현재 예결위에서 예산 심사 중

◇ 동 센터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관련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 전문 심리상담사 등을 확충하여

○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PTSD\*, 우울증 등), 가해자의 정서적 문제에 대한 전문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 피해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후유증 극복을 위한 부모교육·상담과 입원치료 학생들의 학업을 위해 병원내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

◇ 한편, 동 센터를 중심으로 5개 국립병원을 지역 내 청소년 전문 정신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허브(hub)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유기적인 지원체계 구성할 계획

- ◇ 이를 통해 정부는 학교폭력, 따돌림 등과 관련한 예방·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안전망을 촘촘히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7 발주계획부터 대가지급까지 지방계약 전 과정 공개한다**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들에게는 청렴서약서 제출이 의무화 되고, 지자체에서 발주한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 공개가 의무화 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11월 2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 먼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례·금품·향응 및 담합행위를 금지 하는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입찰참가자 등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청렴서약서 제도를 운영 중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 또한, 지자체에서 발주한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공개를 의무화했다.

-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발주 사업에 대한 계약의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금까지 지자체는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 사항을 대상으로 월별 수의계약 내역과 분기별 발주계획에 대해서만 공개해왔다.
- ◇ 또한, 지자체 내 소관부서가 다르거나 사업 소재지가 다른 유사사업\*은 통합해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계약 제도」를 마련했다.
- 이를 통해 계약절차가 간소화되고, 예산절감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예시 : 여성회관(여성복지과·A읍), 민방위회관(민방위과·B면), 농민회관(농정과·C면) ⇒ 다목적 회관 건립
- ◇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지방계약의 전 과정이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투명성이 향상되어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8 우수 쌀가공식품 온라인 판매 활성화 추진

- 농식품부,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와 판매를 위한 MOU체결 -

### 《 주 요 내 용 》

◇ 농림수산식품부,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 업무협약식 체결

○ 업무협약 내용 : 우수 쌀가공식품의 판매 활성화

- 일 시 : 2012년 12월 6일 10:00~11:00

- 장 소 : 인터콘티넨털호텔(삼성동 소재)

- 참석자 :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이베이코리아대표, 지자체장, 한국농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100여명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쌀가공식품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쇼핑몰의 대표주자인 G마켓, 옥션과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

○ 쌀가공업체에서는 다양한 쌀가공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영세하여 효과적인 제품 홍보, 유통망 확보가 어려워 온라인 판매 활성화에 발벗고 나섰다.

민간분야 최우수 쇼핑몰인 G-Market, 옥션을 운영하는 (주)이베이코리아와 쌀가공식품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주)이베이코리아 : 전자상거래 시장의 30%이상 점유

◇ MOU를 통한 상호협력사항은 우수 쌀가공식품 상품의 판로 확대, 홍보·캠페인을 통한 상호협력 등이다

○ (농림수산식품부) 우수 쌀가공식품 판매촉진 프로모션 공동

참여 등 전자상거래 매출 확대를 위한 행정적 지원

- (이베이코리아) G마켓, 옥션을 통해 우수 쌀가공식품 홍보·마케팅 및 판매촉진 프로모션 추진, 선진유통기법 업체 교육 등

◇ 이번 업무체결로 G마켓과 옥션에서는 2013년부터 쌀가공식품에 대한 프로모션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수한 농식품 프로모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통해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이 날 행사는 당초 이베이코리아가 추진하고 있는 ‘제4회 e-마케팅 페어’도 함께 진행된다.

◇ 한편, 농식품부는 쌀가공식품 판매확대를 위해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 ‘13년말에는 소비자가 가장 많이 찾은 쌀가공식품업체에 장관상을 수여하여 판매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고,
- 농식품부가 진행하고 있는 아침밥 먹기 캠페인, 11월11일 가래떡의 날 이벤트도 이베이코리아와 공동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 그밖에 기부쇼핑이나 후원쇼핑을 통해 결식아동에 대한 쌀과 쌀관련식품 제공도 힘쓸 계획이다.

# 『쌀가공식품 우수상품 판로 확대』를 위한 업 무 제 휴 협 약 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농림수산식품부·이베이코리아(이하 “양자”라 한다)는 기관간의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우수한 쌀가공식품에 대한 판로를 확대하여 「식량안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농어촌이 식량생산기지로서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양자는 쌀가공산업발전을 위해 쌀가공식품 판매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 상품의 판로 확대, 홍보 및 공동 캠페인을 통한 식량안보의식 고양을 위해 노력한다.

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우수 쌀가공식품 판매촉진 프로모션 공동참여 등 전자상거래 매출 확대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

다. 이베이코리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천한 쌀가공 우수상품에 대하여 지마켓, 옥션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신규 상품 개발을 위한 컨설팅 지원으로 쌀가공식품의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3조(협약의 효력 및 기간)**

가. 본 협약은 양자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나. 협약기간은 상호 협의 하에 해지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제4조(신의성실 의무)** 양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가지고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 조정) 본 협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 및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비밀 유지) 협약 관련기관은 본 협약에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상대 기관의 비밀 사항을 외부에 유출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및 해지) 협약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에 대한 사항을 상호 합의하여 정한 경우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문서로 한다.

위와 같이 쌀가공식품 우수상품 판로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성립의 근거로써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2년 12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이 상 길

(주) 이베이코리아

(주)이베이코리아  
대표이사 박 주 만

## 9 요양병원 옥석 가린다.

- '13부터 요양·정신병원 평가인증 의무화, 이달 10일부터 인증조사 신청 접수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2013년 1월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는 고령화와 노인성·만성 질환 증가로 요양병원 숫자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일부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인권문제, 위생·안전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약 1,300여개 이다.

\* 정신병원 :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상을 포함한 입원 병상이 50병상 이상이면서, 총 허가병상의 50%를 초과하는 의료기관

○ 조사항목은 환자 안전과 진료 및 약물관리의 적정성 등 총 203개 조사항목(정신병원은 198개 항목)을 개발하였으며,

- 말기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외출·외박관리 등 요양·정신병원의 입원환자 특성을 반영하였다.

※ 요양병원·정신병원 인증조사 기준 : 별첨

◇ '요양·정신병원 인증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 요양병원은 향후 3년('13~'15년), 정신병원은 4년('13~'16년)에 걸쳐 인증조사를 실시한다.

### □ 연도별 인증조사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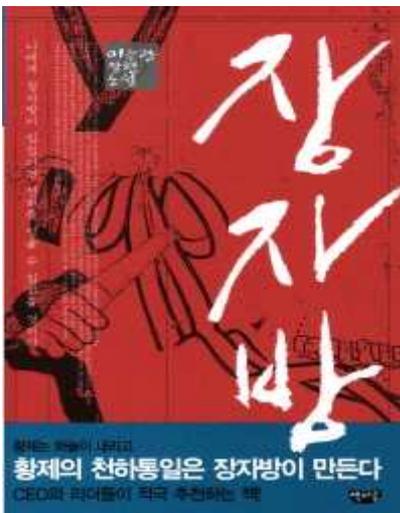
| 구 분            | 인증조사 기준연도      |                 |                    |                    |       | 계     |
|----------------|----------------|-----------------|--------------------|--------------------|-------|-------|
|                | '13상반기         | '13하반기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요양병원<br>(병상규모) | 100<br>250병상이상 | 150*<br>180병상이상 | 450~500<br>100병상이상 | 350~400<br>100병상미만 | -     | 1,037 |
| 정신병원           | 60             |                 | 60                 | 70                 | 72    | 262   |

\*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규 개설 요양병원은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인증을 신청하고, 개설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인증조사를 받아야 한다.
- '13년도 조사대상 기관은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14년 이후 조사대상 기관은 1월2일부터 3월29일까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에서 인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 다만, 내년 상반기에 인증을 받고자 하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병상 규모와 관계없이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사전신청을 할 수 있다.
- ◇ 요양·정신병원 인증의 경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인증비용 지원과 함께 행정적 제재 조치가 수반된다.
  - 현재 정부예산에 요양병원 100개소(8.2억원), 정신병원 60개소(7억원) 인증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며, 요양병원의 경우 150개소(19억원) 추가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 요양병원이 인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 업무정지 15일 또는 5천만원 이하 과징금)대상이 되며, 요양급여 인력가산 대상에서 배제된다.
  - 또한, 요양병원 인증 결과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연계하여,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에 활용할 예정이다.
- ◇ 인증, 조건부 인증, 불인증 등 3가지 인증결과는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들이 병원을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의무 인증 제도를 통해 병원들 스스로 환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 향후 인증 2주기('17~'20년)에는 보다 강화된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요양병원의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예정이다.
- ◇ 아울러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의료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인건강복지 TF」를 구성·운영하여,
  - 급성기 이후 의료·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의 기능을 전문화하고, 의료서비스 연계가 부족한 장기요양보험 시스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연계 모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개선을 위해 승강기(또는 경사로) 설치,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 확보, 안전손잡이 설치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 행복한책읽기



- 도서명 : 장 자 방
- 저자명 : 이 수 광
- 출판사 : 책 마 루
- 출판일 : 2012. 12. 5
- 페이지 : 320쪽
- 가 격 : 11,700원

## □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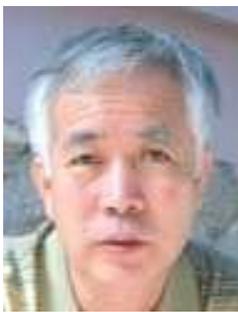
황제의 뒤에서 천하를 평정했지만 나가고 들어올 때를 지켰던 한 사내의 이야기!

중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역사 속의 제왕들이 가장 유능한 책사로 꼽는 '장자방'을 다룬 역사소설 『장자방』. 《조선을 뒤흔든 16가지 살인사건》 《조선을 뒤흔든 16가지 연애사건》 등 '조선을 뒤흔든' 시리즈로 유명한 이수광이 동양 역사상 가장 걸출한 지략가이자 전략가로 꼽히는 장자방의 일대기를 드라마틱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거리의 부랑자에 지나지 않았던 유방을 도와 항우를 꺾고 한제국을

건설하는데 일등공신을 한 장자방. 그는 천하를 통일하는 책략을 넘어 세상을 경영하는 도인의 경지에 이른 인물로, 부귀와 권력을 탐하지 않아 천수를 누렸다. 장자방의 행적과 처세를 통해 그의 진면목을 다시 새겨볼 수 있는 이 책은 현세의 관리들에게 탐욕을 경계하라는 가르침을 안겨준다.

## □ 저자소개(이수광)



저자 이수광은 1954년 충북 제천 출생. 198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제14회 삼성문학상, 미스터리클럽 제2회 독자상, 제10회 한국추리문학 대상 수상. 소설과 역사서를 넘나드는 상상력과 자유로운 글쓰기로 독보적인 대중 역사서의 계보를 창조했다. 지은 책으로 《조선을 뒤흔든 16가지 살인사건》, 《조선을 뒤흔든 16가지 연애사건》, 《나는 조선의 국모다》, 《차랑, 왕을 움직인 소녀》, 《마의 백광현》 등이 있다.

## □ 책속으로

“나를 도와 한나라를 세운 것은 모두 장자방의 공이다.” 유방이 좌우를 살피면서 말했다. “우리는 장자방을 알지 못하지만 이름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위풍이 당당한 장부입니까?” 패현의 부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위풍이 당당하다고? 핫핫핫!” 유방이 호탕하게 웃음을 터트렸다. “나는 자방이 체구가 장대하고 위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를 처음 만나보니 상모(相貌, 얼굴)가 부인호녀(婦人好女)와 같았다. 공자가 말하기를 ‘용모로 사람을 취하면 자우와 같은 사람에게 실수하게 된다’고 했다.

유후 장량은 부인처럼 예쁘장하게 생겼으나 지모(智謀)로서 따를 자가

없었다.” “그의 책략은 어떠합니까?” “무릇 군막 안에서 계책을 세워, 천 리 밖 승부를 결정하는 것에서 나는 자방만 못하다. 자방이 있었기 때문에 천하를 얻을 수 있었다.” 유방은 군사들을 재촉하여 장자방을 불러 오게 했다. 그러나 군사들이 장자방의 집으로 달려갔을 때 그는 보이지 않았다.

“장자방이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군사들이 돌아와 보고했다. “남긴 것은 없더냐?” “그림 한 폭이 있습니다.” 유방은 군사들이 가지고 온 족자를 벽에 걸고 그림을 살폈다. ‘장자방이 그림 속으로 들어갔구나.’ 유방은 탄식을 하면서 다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그는 10여 일 동안 패궁에서 잔치를 벌이다가 관중으로 떠나려고 했다. 패현의 부모들과 한때 벗으로 지냈던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면서 더 머물러 달라고 청했다.

“내가 머물면 나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르신들에게 폐가 됩니다.” 유방은 부모들과 작별하고 패궁을 떠났다. 패현의 모든 사람들이 서쪽 교외까지 나와서 술과 음식을 바쳤다. 유방은 차마 그들과 헤어질 수가 없어서 사흘을 더 길에서 머물면서 먹고 마셨다. ‘이제 내가 떠나면 죽기 전에 다시 돌아올 수 없겠지.’ 패현을 떠나며 유방은 비 오듯 눈물을 흘렸다. 그는 수레에 앉아 점점 멀어지는 고향 산천을 돌아보았다. 저 멀리 패현의 한 들판에 흰 옷자락을 표표히 날리며 한 사내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자방이 나를 전송하는구나.’ 유방은 가슴이 먹먹해져 왔다. 아름다운 사내, 장자방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장자방은 몸이

부르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상법으로 살핀 유방의 관상은 왕도를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부랑자들과 어울려 왁자하게 술을 마시는 유방은 한낱 허풍쟁이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예.” “저 친구는 이름을 변쾌(樊?)라고 하는데 백정 출신이지만 호랑이도 잡을 수 있는 용사요.” “그렇습니까?” 장자방은 변쾌를 보고 탄복했다. 변쾌는 눈이 부리부리하여 호상(虎相)이었다. 기골은 장대하고 눈빛은 시퍼런 불길이 뿜어지는 것 같았다.

“저 친구는 조참이라고 합니다.” 조참은 단정하지만 강골을 갖추고 있었다. “모두 영웅들이군요.” 장자방은 유방과 변쾌, 소하, 조참의 얼굴을 살피고 감탄했다. 상법으로 그들의 얼굴을 살피자 한 나라를 쥐고 흔들 관상이었다. ‘천하의 인재들이 어찌 이곳에 모여 있는가? 이것이 하늘의 뜻인가?’

장자방은 요희의 말을 들으면서 씩씩한 생각이 들었다. 요희는 그를 천하의 주인이 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은공께서 손자(孫子, 손무)의 말을 아십니까?” “어떤 말을 일컫는 것이냐?” “지피지기면 백전백태(知彼知己 百戰百殆)라고 했습니다. 병법에만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장자방은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요희가 손자의 말을 빌려 그에게 이야기한 것은, 자신은 군주가 될 인물이 아니니 책사가 되라는 깊은 뜻이 있었다.

선불리 군주가 되려고 하면 목숨이 위태로우나 자신의 그릇을 알고 대응하면 위태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장자방은 요희를 가만히 쏘아보았다. “그대는 내 절을 받으시오.” 장자방이 벌떡 일어나서 두 손을 머리까지 들어 올리고 요희에게 큰절을 했다.

## □ 출판사 서평

장자방 봄 매화와 가을 국화는 피는 때가 다르거늘... 황제의 한 걸음 뒤에서 천하 구만 리를 평정했으면서도 나가고 들어올 때를 지켰던 한 사내의 이야기 초한지의 재발견! 국내 최초 장자방을 다룬 본격 역사소설! 황제는 하늘이 내리고, 황제의 천하통일은 장자방이 만든다! 귀양지에서 옛 조선의 한 선비는 노래했다.

“옥에 흙이 묻어 길가에 버리시니, 오는 이 가는 이 흙이라 하는고야, 두어라 알 이 있을지니, 흙인 듯이 있거라” 왕에게 버림받은 가운데에서도 선비의 기상을 잃지 않으려는 처연하지만 의연한 자세이다.

### 장 자 방

봄 매화와 가을 국화는 피는 때가 다르거늘...  
황제의 한 걸음 뒤에서 천하 구만 리를 평정했으면서도  
나가고 들어올 때를 지켰던 한 사내의 이야기

초한지의 재발견!

국내 최초 장자방을 다룬 본격역사소설!

황제는 하늘이 내리고, 황제의 천하통일은 장자방이 만든다!

귀양지에서 옛 조선의 한 선비는 노래했다. “옥에 흙이 묻어 길가에 버리시니, 오는 이 가는 이 흙이라 하는고야, 두어라 알 이 있을지니, 흙인 듯이 있거라” 왕에게 버림받은 가운데에서도 선비의 기상을 잃지 않으려는 처연하지만 의연한 자세이다. 하지만 이보다도 2천여 년 전에 중국 땅에서는 흙을 털어 옥이 되는 순간에 오히려 흙으로 돌아간 선비가 있었다. 바로 장자방이 그 주인공. 한고조 유방을 도와 항우를 꺾고 한나라 시대를 연 일등공신 장자방. 하지만 그는 “봄

매화와 가을 국화는 피는 때가 다르다”는 말을 남기며 천하통일 후 일등공신의 부귀영화를 뒤로 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홀연히 사라졌다.

자기 시대, 자기의 역할을 다하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후 스스로 무대 뒤로 사라진 거인의 이야기는 욕망과 무한경쟁에 찌들어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초한지의 주요 책사로만 알려져 있는 장자방의 진면목을 다시 새겨볼 수 있는 책이다.

## □ 책속으로 추가

유방은 장자방의 계책에 따라 관중을 향해 진격한다는 소문을 내고 환원성을 우회했다. 유방의 군대가 우회하는 것을 본 환원성의 진군은 벌떼처럼 쏟아져 나와 뒤쫓았다. 유방의 군대는 쫓기듯이 계곡으로 달려갔다. “초군이 달아난다. 모두 죽여라.” 환도성의 진군은 파도가 몰아치듯 유방의 군대를 뒤쫓았다. 그러나 그들이 20리도 뒤쫓지 못했을 때 양쪽 계곡에서 천둥소리와 같은 북소리가 들리더니 번쾌와 팽월의 군대가 쏟아져 나왔다.

“매복이다.” 환원성의 군사들은 우왕좌왕하다가 하다가 몰살을 당했다. 유방의 군대는 대승을 거두었다. “군사의 계책이 절묘합니다.” 번쾌가 대승을 거두고 유방에게 달려와 기뻐했다. “계책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장군들이 용맹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장자방은 한가하게 부채질을 하면서 웃고 있었다. 영양은 오광도 공격하다가 실패했고 항량도 함락하지 못한 견고한 요새였다.

“조나라 군사가 관중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척후병이 다급하게 달려와 보고했다. 장자방은 척후병의 보고를 받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조나라 군을 누가 지휘하느냐?” “별장 사마양이라고 합니다.” “조나라 왕이 아니라 다행이구나. 주공, 즉시 황하로 달려가서 배를 모조리 파괴하고 평음을 공격하십시오.”

“조나라는 우리와 같이 진나라를 공격하는데 왜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오?” 유방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유방의 심복인 번쾌와 소하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웅성거렸다. “초희왕의 말을 잊지 마십시오. 사마양이 관중에 먼저 들어가면 그가 왕이 됩니다.” 장자방의 말에 유방의 참모들은 벼락을 맞은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진나라 군은 조나라, 제나라, 위나라의 연합군에 맞서기 위해 대군을 동원하여 동진하고 있었다.

장한이 이들을 격파하자 항우는 관중을 향해 진격하던 진격로를 동쪽으로 바꾸었다. “평음을 공격한다.” 유방은 대군을 휘몰아 사마양의 진격로인 평음을 공격하여 점령했다. “강가의 배를 모조리 파괴하라.” 장자방이 군사들에게 영을 내렸다. 이에 군사들이 황하 강변을 누비면서 강가의 나룻배를 모조리 파괴하고 불을 질러 사마양의 진격을 차단했다.

“주공, 이제 관중으로 진격하십시오.” 유방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관중을 향해 달려갔다. “백전백승(百戰百勝) 부전이승(不戰而勝)… 손자가 말하기를 백번 싸워 백번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책이라고 했습니다.” 장자방은 진격로에 있는 각 군과 현에 사자를 보내 회유했다. 투항하는 군수와 현령은 그대로 자리를 보전해 준다고

약속하고, 진을 치는 것이 대의라고 설득했다. 장자방의 설득에 따라 여러 군과 현이 투항하면서 유방은 싸우지 않고 수백 리를 진격할 수 있었다.

유방의 군대는 낙양 동쪽에서 진군과 교전하고 남양 군수 여의와 교전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여의는 완성(宛城)으로 달아나 방어선을 구축했다. 유방은 완성을 맹렬하게 공략했으나 함락되지 않았다. “완성에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다른 길로 돌아서 관중으로 진격하라.” 유방은 완성을 우회하여 관중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주공께서는 관중에 입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눈앞의 진군을 그냥 두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완성을 지나가면 완성의 군사들이 배후를 공격할 위험이 있습니다.”

장자방이 완성을 우회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완성의 방어가 완강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소?” “우리는 이미 완성을 지나왔습니다. 군복을 바꾸어 입고 깃발을 바꾸면 저들은 구원군이 온 줄 알고 방심할 것입니다.” “좋은 계책이오.” 유방은 장자방의 계책대로 깃발을 바꾸고 군사들의 군복을 갈아입힌 뒤에 완성으로 달려갔다. 완성의 진군은 구원군이 온 줄 알고 방어를 소홀하게 했다. 유방의 군사들이 목전에 도착하여 일제히 공격을 하자 일거에 무너졌다.

‘아아 이제 말도 없는데 어디로 달아난다는 말이나?’ 유방은 눈앞이 캄캄했다. ‘여기서 죽음을 당할 수는 없다. 뛰어서라도 위기를 모면해야 한다.’ 유방은 몸을 일으켜 어둠 속으로 달아나려고 했다. “대왕!” 그때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유방이 낮익은 목소리라 뒤를 돌아보자 말을 타고 강을 건너온 사람은 뜻밖에 장자방이었다.

“선생은 군사가 아니오?” “예. 신, 장자방입니다.” 장자방은 강을 건너 오자 굴러 떨어지듯이 말에서 내렸다. “대왕, 어서 이 말에 타십시오.” 장자방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유방에게 말고삐를 넘겼다. 그러는 동안에도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오고 있었다. “선생은 어떻게 하겠소?” “신은 걱정하지 마시고 대왕께서 말에 올라 속히 탈출하십시오.” “선생, 우리 같이 타고 달아납시다.” “아닙니다. 적병이 강을 건너기 전에 속히 말을 타고 달아나야 합니다.”

유방이 강을 보자 적군이 이미 사납게 강을 건너고 있었다. 유방은 말에 올라타면서 장자방을 재촉했다. “선생, 어서 같이 타고 갑시다.” “아닙니다. 대왕이 어서 말에 오르시어...” 장자방은 미처 말을 맺지 못하고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졌다. 강 건너에서 날아온 화살이 그의 가슴에 박힌 것이다.

“선생!” 유방은 처절하게 부르짖으면서 말에서 내리려다가 추격병들이 쇄도하자 말을 박차고 달리기 시작했다. 유방은 팽성 전투에서 대패했다. 다행히 옆구리를 초군의 창에 찔린 번쾌가 살아 돌아왔으나 책사인 장자방이 보이지 않았다. ‘장자방은 적멸지수계(賊滅之首計)로 항우를 패퇴시키는구나.’ 한신은 장자방의 지략에 감탄했다. 적멸지수는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우두머리를 제압한다는 뜻이었다. 장자방은 성보에서 기발한 작전으로 항우를 본진에서 갈라놓고 패퇴시켰다. 그리고는 항우가 달아난 틈에 그의 대군을 몰살시켰다.

‘이제 관문착적(關文捉賊)으로 해하에서 항우를 죽일 것이다.’ 관문착적은 문을 닫아걸고 도적을 잡는다는 뜻이었다. 한군은 초군을 추격하지 않았다. 50만 명에 이르는 한군은 항우와 떨어진 초의 본진을

맹렬하게 공격했다. 항우의 본진은 전체가 20만 명이였다. 그들은 한군에 도륙을 당하면서 해하로 탈출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옥의 전장이나 다를 바 없었다. 초군의 비참한 패배였다. 초군의 시체가 산처럼 쌓이고 피가 강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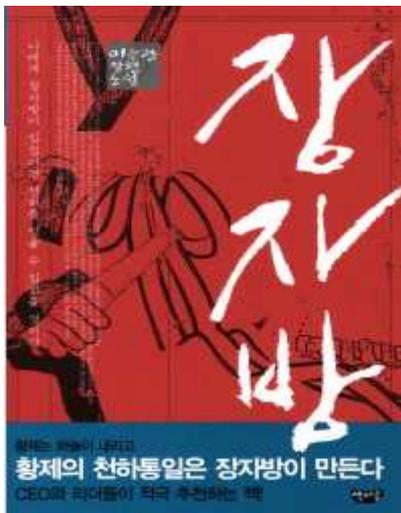
## MEMO

#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12년 11월 23일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
- ☎ (042) 606-5021 / 팩 스 (042) 606-5029

- ①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 화장실 대기시간 줄어든다
- ② ‘아리랑’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확정
- ② 농어촌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 대폭 확대
- ③ 내년부터 수행자에게 맞춤형 교정교화로 재범방지 노력 강화
- ④ 장애인용 공중화장실도 남·녀 구분해 설치하도록 권고
- ⑤ '13년부터 5개 국립병원에 학교폭력 치료상담센터 운영
- ⑥ 발주계획부터 대가지급까지 지방계약 전 과정 공개한다.
- ⑦ 우수 쌀가공식품 온라인 판매 활성화 추진
- ⑧ 요양병원 옥석 가린다.

장자방.....1



- 도서명 : 장 자 방
- 저자명 : 이 수 광
- 출판사 : 책 마 루
- 출판일 : 2012. 12. 5
- 페이지 : 320쪽
- 가 격 : 11,700원